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

2019. 2.

감 사 원

인쇄 :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이승휘 귀하 (우03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화동))

(경유)

제목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통보

1. 국민 다수의 공익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인 대표로 2018. 8. 13. 우리 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분류번호 : 2018-공익-087,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기초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공개문 전문 1부. 끝.

감 사 원

부감사관 김태형 과장 2019.3.5. 정인소

협조자

시행 감사청구조사국제1과-112 (2019. 3. 6.) 접수

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삼청동, 감사원) / www.bai.go.kr

전화번호 02-2011-3281 팩스번호 02-2011-2284 / ampmbest@korea.kr / 비공개(5,6)

Scanned by CamScanner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중점 및 대상 ····· 1

3. 감사실시 과정 ····· 2

4. 감사결과 처리 ····· 2

Ⅱ.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개요 ····· 3

1. 업무추진비의 집행 주체에 따른 분류 ····· 3

2. 업무추진비의 일반적인 사용 실태 ····· 3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특징 ····· 4

Ⅲ. 감사결과 요약 ····· 5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 ····· 10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주의) ····· 10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구인(A)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등 22개 지방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였다며 2018. 8. 13. 감사원에 아래 6개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청구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감사청구 요지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4. 50만 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청구 요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등 2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쇄 :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3. 감사실시 과정

2019. 1. 14.부터 같은 해 1. 22.까지 7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의 의견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2. 2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Ⅱ.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개요[1)]

1. 업무추진비의 집행 주체에 따른 분류

①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집행기관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2. 업무추진비의 일반적인 사용 실태

업무추진비는 연혁적으로 공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 등의 특수활동을 제외한 통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그중 일부는 일정 직책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집행되어 왔고, 이와 유사한 성격인 민간기업의 업무추진비도 일반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체 집행액의 대부분이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식사 등 대인 접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므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개요를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이세·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업무 및 직책 수행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특징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선거로 취임한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교류, 지역 현안 해결 등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집행기관업무추진비에 적용되는 집행기준에 비해 [표]와 같이 완화된 집행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집행기관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집행기관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공통점 (주요)	1.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2.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기재 3.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좌동)
차이점	1. 심야(23시 이후) 사용 제한 2. 업무 관련성 없는 지역(예: 자택근처 등) 사용 제한	(미적용)

자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재구성

인쇄 : 김태형 / 광사청국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Ⅲ. 감사결과 요약

【청구요지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전(前) 의회의장 B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혈압약을 구입하는 등 5,408천 원을 사적으로 사용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 의회의장 B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 데 총 872,580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장에게 사적 용도로 집행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참고 요지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등 14개 지방의회가 공무국외연수기간 중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하고 있어 위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하 "의장단"이라 한다)의 직무수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장단뿐만 아니라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 등도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등 14개 지방의회의 의장단이 공무국외연수기간 중에 사용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44건 5,184,800원)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의회 의장의 공무국외연수기간(2014. 10. 24. ~ 2014. 11. 2.) 중에 복지도시위원회가 2014. 10. 27. 의정활동(복지도시위원회워크숍 간담회) 목적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33,000원을 집행하는 등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장단의 연수기간 중에 의정활동 목적으로 사용한 위 44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되어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다.

인쇄 :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청구 요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회에 걸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지역특산품 14,382,000원, 등산복 7,162,800원 등을 구입하여 동료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있어 위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2] 4호 바목에 따르면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제공한 선물에 대해 선심성 집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8회 걸쳐 개최한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는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이므로 행사 관계자에게 지역특산품과 체육용품을 제공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종결 처리하였다.

【청구 요지 4】

[50만 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4건) · 성동구의회(2건) · 용산구의회(2건)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두 번에 나누어 집행하고 있어 위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등 17개 지방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세부집행지침 6. 의회비 6-5.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등 3개 지방의회가 50만 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두 번에 나누어 집행하였다고 의심되는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강동구의회·용산구의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하였고, 성동구의회는 잘못 입력하여 취소된 금액(정당금액: 200,000원, 취소금액: 312,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등 17개 지방의회가 50만 원 이상 집행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134건 118,187,250원)을 확인한 결과,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고 집행목적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 허용되는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다.

【청구 요지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 마포구의회 · 서초구의회는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 등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어 위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 등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규정은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마포구의회·서초구의회가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 등에서 집행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70건 17,218,130원)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의회 의장이 2014. 8. 6. 의정활동(의정활동관련 간담회) 목적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95,000원을 집행하는 등 위 70건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 허용되는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다.

【청구 요지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 구로구의회 · 용산구의회 · 관악구의회는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어 위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주말 및 명절 연휴 등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평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명절 연휴 등 휴일에도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구로구의회·용산구의회·관악구의회가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집행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표본추출 40건 2,825,100원)을 확인한 결과, 강동구의회 C위원장이 2017. 10. 9. 한글날(휴일)에 의정활동(명일전통시장 어닝 정비공사 현장점검) 목적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4,000원을 집행하는 등 위 40건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하였다.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성명: 김태형 직급: 5급 내선번호: 328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

내 용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은 전(前) 의회의장 B에게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매월 3,300,000원을,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는 매월 3,880,000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배정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구 행정자치부령) 제3조 제2항 [별표 2]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6. 의회비 6-5.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등 의회와 관련된 공적인 업무수행에만 집행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전 의회의장 B은 2014. 7. 23. □□의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을 방문하여 처방약을 수령한 후

Scanned by CamScanner

3일이 지난 같은 해 7. 26. 약제비 비용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9,800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집행내역"과 같이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 데 총 872,580[2]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전 의회의장 B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당초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은 사적으로 집행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72,580원을 조속히 회수 조치하고, 향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사무국장은

사적 용도로 집행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회수[3]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2) 의장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건강음료 비용(555,600원)과 약제비(872,580원)와 합쳐서 1,428,100원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함

3) 2019. 1. 14. 전 의회의장 B이 사적으로 집행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72,580원을 조속히 반납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

[별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집행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집행자	집행일자	조제일자	집행장소	집행내역	집행금액
1	B	2014. 7.26.	2014. 7.23.	△△약국	약제비	39,800
2	B	2014.11.26.	2014.11.25.	△△약국	약제비	40,800
3	B	2015. 1.17.	2015. 1.17.	△△약국	약제비	39,000
4	B	2015. 4.22.	2015. 4.20.	△△약국	약제비	38,700
5	B	2015. 6.23.	2015. 6.23.	△△약국	약제비	36,100
6	B	2015. 7.22.	2015. 7.20.	△△약국	약제비	41,100
7	B	2015. 8.22.	2015. 8.20.	△△약국	약제비	35,200
8	B	2015. 9. 7.	2015. 9. 7.	△△약국	약제비	6,600
9	B	2016. 4.20.	2016. 4.18.	△△약국	약제비	37,480
10	B	2016. 7.20.	2016. 7.18.	△△약국	약제비	96,500
11	B	2016.10.11.	2016.10.10.	△△약국	약제비	101,800
12	B	2017. 1.11.	2017. 1. 9.	△△약국	약제비	99,400
13	B	2017. 3. 6.	2017. 3. 6.	△△약국	약제비	8,800
14	B	2017. 4.25.	2017. 4.10.	△△약국	약제비	96,900
15	B	2017. 8.12.	2017. 8.11.	△△약국	약제비	69,900
16	B	2018. 1.10.	2018. 1. 9.	△△약국	약제비	84,500
계	16회					872,580

주: 집행일자와 조제일자의 차이는 업무추진비의 선·후 집행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
자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및 △△약국 자료 재구성

인쇄: 김태형 /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 (2019-03-05 08:40:28)

Scanned by CamScanner